◉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 제2022-32호

「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」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(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) 고지서를 우편(등기)로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함에 따라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2년 07월 01일

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

과태료(가산금 및 중가산금)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

1. 공시송달 대상

연번	업 소 명	대표자	체납액(원)	위반법명	체납자 주소
1	한국수맥교육연구협회	김동환	4,445,000	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	(35286) 대전광역시 서구 동서대로 993-1, 2층

2. 공고기간 : 2022. 7. 1. ~ 2022. 7. 15.(15일)

3. 처분근거 : 「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」 제15조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,

4. 공고내용 : 과태료(가산금 및 중가산금 포함) 납입고지서가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,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5. 문 의 처 : 원자력안전위원회 운영지원과
(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(남창동), 롯데손해보험빌딩 13층, 02-397-7243)